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66

발의연월일: 2022. 5. 19.

발 의 자:김용판·서일준·임병헌

강대식 • 이주환 • 하영제

박대수・김상훈・최춘식

유경준 • 이종성 • 김학용

권명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등"이라 함)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해외 전쟁 등으로 인하여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이 심하고, 농축수산업 등에 종사하려는 영농자녀등이 점차 줄어드는 등 농축수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농축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경농민과영농자녀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 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면) ①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 림지 · 어선 · 어업권 · 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 (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 선 · 어업권 · 어업용 토지등 · 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 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 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 (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 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 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 24년 12월 31일-----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1. ~ 3. (생 략)
- ② ~ ⑧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⑧ (현행과 같음)